

종 법(宗法)

승적 취적 전적 제적법

- 제6조** 1. 본종의 승려는 득도수계 후 1개월 이내에 소정 입적원을 총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.
2. 입적 신청은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총무원 또는 지할분원을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.
- 가. 주민등록증 2통
 - 나. 이력서 2통
 - 다. 주민등록증 앞 뒤 카피한 것 2부
 - 라. 증명사진 4장
3. 연령 18세 미만에 삭발수계한 자를 사미승이라 하고 승적은 18세 이후에 취득할 수 있다.
- 제7조** 1. 총무원장은 입적서류에 의하여 심사한 후 반려 또는 입적을 허가하고 본종 소정의 도첩 승적부 사본과 승려증을 발급해야 한다.
2. 승니는 본종에 입적한날로부터 승려의 분한을 향유한다.
3. 범람 승랍은 수계일로부터 기산한다.
- 제8조** 1. 승적의 원본은 총무원에 두고 부분은 총무원 또는 재적사에 둔다.
2. 재적사는 전통 대중사찰로서 총무원장이 지정한다.
- 제9조** 승려가 신상이동 행해 법계승진 등 승적부에 변동기재 사항이 있을 때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원에 분한 정정 신고를 총무원장 경유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10조** 1. 승려가 사망 퇴속 탈종 체탈도첩 징계 등 제적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제적 신청서를 총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2. 신고의무자가 3개월이 지나도록 신고치 않을 때에는 총무원장 직권으로 제적할 수 있다.
3. 제적당한 승려는 종정의 사면으로 복권되며 복권으로서 복직된다.